###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721 제출연월일 : 2024. 10. 16.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판매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 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장관은 제조 •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			
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u>날부터 1년 이내에</u>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			
지 아니한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